

## &lt;서면답변서&gt;

○ 이주상 위원(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호 자치행정위원회 2004. 11. 30)

(질 의)

○ 2004년도 도세 세수결함 및 향후 징수 및 조정 대책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금년 10월말 현재 도세징수액은 4조 1,165억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1,561억원 (△3.7%)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영향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 2004년도 10월말 현재 도세징수 실적 》

(단위 : 억원)

| 구분<br>연도별 |     | 연 간<br>목표액 | 징 수 실 적 |       |        |         |       | 연 간<br>목표대비 |
|-----------|-----|------------|---------|-------|--------|---------|-------|-------------|
|           |     |            | 계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10월   |             |
| 2004      |     | 55,900     | 41,165  | 9,974 | 12,232 | 14,642  | 4,317 | 73.6%       |
| 2003      |     | 53,911     | 42,726  | 9,745 | 12,885 | 15,818  | 4,278 | 79.3%       |
| 증<br>감    | 금 액 | 1,989      | △ 1,561 | 229   | △ 653  | △ 1,176 | 39    | △ 5.7%P     |
|           | 비 율 | 3.7%       | △ 3.7%  | 2.4%  | △ 5.1% | △ 7.4%  | 0.9%  |             |

※ 타 시·도 징수실적 (억원, 전년 동기대비)

· 서울 81,115(10.2% 감) 인천 9,528(5.2% 감) 경남 6,594(3.9% 감) 충남 5,731 (43.1% 증)

○ 주요 감소원인은 국내 경기침체와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억제정책 등 부동산 거래 위축과 자동차 등록 감소로 취득세·등록세 690억원 감소하였으며,

- 10월말 현재 '04 : 28,211억원 / '03 : 28,901억원 (전년대비 2.4% ↓)

○ 로또 등 경쟁 레저산업과 경기침체 영향으로 경마입장객이 줄어들면서 레저세 682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 10월말 현재 '04 : 3,446억원 / '03 : 4,128억원 (전년대비 16.5% ↓)

※ 경마입장객(일평균) 감소 '04 : 147천명 / '03 : 159천명 (전년대비 7.5% ↓)

- 금년 연말에도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정책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 경마입장객 감소에 따른 레저세의 하향추세가 지속되어 세수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연말 세수감소 예상액 : 3,608억원  
 · 전년대비 목표 증가액 1,989억원 + 전년 동기대비 세목별 징수율 적용 1,619억원
-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시·군 세무과장 회의를 통하여 비과세·감면 및 사치성 재산에 대한 부과 일제조사와 법인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익세원을 발굴하고  
 「채납액광역기동반」 운영 활성화와 공매처분 등 채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세수결함에 대한 사업비 조정은 예산부서에서 도의회에 추경예산을 제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도세 세수추계기법 적용과 관련, 일관된 기법을 적용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에는 진도비기법, 2004년에는 탄성치기법, 2005년에는 최근 징수추세 진도비기법을 적용하여 세수를 추계하였습니다.
- 그 동안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진도비기법은 경제의 불투명성과 성장률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 세수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지며,
- '04년도에 적용한 탄성치기법은 '03년 3월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제시된 기법으로 경제성장에 따라 도세가 얼마가 증가하는 지에 대한 상관관계를

회귀분석기법에 의하여 도출한 추계방법이나 경제여건이 안정적인 상승시기일 때 유용한 기법이며

- 금년같이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가 정책적 요인으로 급격히 감소할 때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 따라서, 내년도 세수추계는 '03년 이후 도세수입의 하향 추세와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현실을 고려하여 최근 2개년간 세수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세목별 징수실적을 토대로 산정한 결과 금년 목표액보다 5,200억원이 감소한 5조 700억원을 추계하였습니다.

< 산 출 >

- ▷ '04. 9월말 전년도 동기대비 세목별 징수실적을 토대로 산출

$$\frac{50,700\text{억원}}{('05\text{ 세수추계액})} = \frac{52,292\text{억원}}{('04\text{ 최종 장수예상액})} \times 97\% \left( \frac{'04. 9\text{월말 징수액}}{'03. 9\text{월말 징수액}} \times 100 \right)$$

※ 9월말 기준 : '03 ----- 38,448억원, '04 ----- 36,848억원

- 정홍자 위원(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호 자치행정위원회 2004. 11. 30)

(질 문)

- 2005년도 기채예산액 1,000억원을 승인받았는데 기채승인 절차와 기준액 설정 등 경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답 변)

- 경기도는 2005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을 행정자치부로부터 6개 사업 1,000억원을 승인받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채 발행 승인 절차는 적채(適債)기준을 충족하는 단체에 한하여 행정자치부로 승인신청을 하며 행정자치부는 적채단체 기준 등을 검토하여 각 자치단체로 승인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채(適債) 단체 기준》

- ① 최근 4년간의 채무상환액을 일반재원으로 나눈 지표인 “채무상환비율”은
  - 정부지침상의 적채기준은 20%이하이나, 경기도는 '04. 6월말 기준 0.93%
- ② 실질수지를 일반재원으로 나눈 지표인 “실질수지비율”은
  - 정부지침상의 적채기준이 -10% 이상이나, 경기도는 '04. 6월말 기준 5.62%
- ③ '03년도 징수실적을 '02년도 징수실적으로 나눈 지표인 “지방세 징수비율”은
  - 정부지침의 적채기준이 90% 이상이나, 경기도는 97.06%로서 적채기준 충족

《적채(適債) 사업 기준》

- ① 공용 및 공공용시설의 설치
  - ② 당해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 지방공기업법상 적채사업, 경영수익적사업, 출자금·대부금 등
  -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 ④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 ⑤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 ⑥ 계속사업으로써 지방재정투융자심사시 사업계획서에 지방채발행계획액의 60% 범위내
  - ⑦ 기타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05년 당초예산의 지방채발행액을 1,000억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경기전망 등을 감안, 긴축재정을 운영한다는 원칙하에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지방채발행을 승인받았으며
- 향후 재정수요와 세수전망 등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추가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 문)

-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라 지방도로사업 등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지방도로 정비사업으로 지원되던 지방양여금 재원이 지방교부세에 포함되어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이

'04년 15% ⇒ '05년 18.3%로 상향 조정되어 보통교부세를 교부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한 재원이 일괄이양 되었으나,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는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 경기도의 건의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도로정비사업이 완료되는 '08년도까지 매년 지방교부세에서 8,500억원을 별도 재원으로 하여 지원하게 되었으며 경기도 분은 '05년도에 424억원이 배분될 계획입니다.
- 또한, 농어촌지역개발사업과 청소년 육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보조사업으로 계속되며,
- 수질오염방지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속 보조됨으로써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 '09년 이후부터 지방도로정비의 신규사업에 대한 재원확보가 어려움으로 예상되므로
-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에서 '08년도 까지 매년 8,500억원씩 배분하는 한시적 규정을 개정하여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서도 지방도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 황치문·김용식 위원(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호 자치행정위원회 2004. 11. 30)

(질 문)

- 황치문 위원님이 내년도 예산운용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세정운영종합평가 등 상사업비 지원폐지 용의에 대하여 물으시고,
- 김용식 위원님이 시·군의 시상제도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 변)

- 세정운영 종합평가결과 시상 등은 우수 시·군에 상사업비를 지급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과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써

-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어 금년도 12억 5,000만원이던 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는 7억원으로 축소하고, 3억 9,000만원이던 세외수입 종합평가 상사업비는 세정운영 평가에 통합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김용식 의원님 요구자료 별도 제출

'05년도 인센티브 시·군 지원예산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 '04년도<br>예산(A) | '05년도<br>예산(B) | 증감<br>(B-A) | 비고       |
|-------------------|----------------|----------------|-------------|----------|
| 합 계               | 3,150          | 1,835          | △ 1,495     | △ 41.7%  |
|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보조     | 500            | 300            | △ 200       |          |
|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 1,250          | 700            | △ 550       |          |
|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 600            | 600            | -           |          |
| 납세자 경품권추첨제 사업비 지원 | 310            | 155            | △ 155       |          |
|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 390            | 0              | △ 390       | 세정평가로 통합 |
| 성실납세자 상사업비 지원     | 100            | 80             | △ 200       |          |

- 김용식 위원(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호 자치행정위원회 2004. 11. 30)

(질 문)

- 체납액 징수 등을 위하여 읍·면·동 재무계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읍·면·동의 재무계 부활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재무계 폐지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점은 읍·면·동 세무업무담당 인원이 분청으로 이관되어 읍·면·동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지방세 관련 기초자료 조사와 납세고지서 송달 및 체납세 징수 등이 원활하게 운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세정관계관회의 등을 통하여 지적하고 있으나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충원의 어려움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의 부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시·군에 반영하여 읍·면·동내 세무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호 자치행정위원회 2004. 11. 30)

(질 문)

-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은
  - 경기침체와 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에 따른 수도권 산업기반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공장 이전부지에 아파트단지의 조성을 억제하고 도시형공장을 유치하여야 하므로
  - 준공업지역내에 신·증설되는 도시형 공장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목적에 부합되어 지방세를 경감하였습니다.
- 과세경감대상은
  - 준공업지역내에서 도시형 공장의 신·증설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경감 대상자는 종전 사업장 소재지를 불문하고 모두 감면대상으로
- '04년도 감면현황은 2개 공장의 취득·등록세 2,700만원입니다.
- 아울러 경기도는 타 시·도에 비해 물류비와 인력자원 확보가 용이한 기업활동 선호지역으로 준공업 지역의 도시형 공장에 대한 세제지원이 실시될 경우 세수 감소로 인한 문제점보다는 인구과밀 및 자족기반 상실을 방지하는 인센티브로서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자료>

- 도시형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대기환경보전법의 4종 사업장 내지 5종 사업장, 수질환경보전법의 제5종 사업장
- 경감세목 및 비율
  - 취득세·등록세 : 50% 경감
  - 재산세·종합토지세 : 5년간은 50% 경감
- 경감지역 : 도내 준공업지역 전체 (23개 시·군 8,243천 m<sup>2</sup>)
- 목적사업 외 타용도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추정규정 운영은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 2년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한 세액을 추정합니다

○ 이주상 위원(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호 자치행정위원회 2004. 11. 30)

(질 의)

- 고액채납자 미공개에 따른 이유 설명과 법령을 개정할 생각은 없는지와
- 채납액 정리방안 및 징수가능 전망과 납세능력 상실자 등에 대해 결손처분 의향과 골프장 채납액 발생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이 요구하신 채납자의 명단은 납세자 개인의 지방세 부과내역을 공개하는 결과가 되어 이는 그 납세자 개인 또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내지 재산보유 현황을 추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 헌법상 사생활 보호 조항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 등에서 정보 공개의 한계로 설정하고 있는 개인정보공개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 비공개를 전제로 한 채납자의 명단 열람도 지방세법상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를 부과 징수를 위해 취득한 자료는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 그 동안 채납액정리 정리를 위해 부진시군 정리대책 보고회를 도 주관으로 '04.

11. 9 실시한 바 있으며 시·군 부단체장 주관으로 11월 중 자체 보고회를 개최하고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추진토록 하여 금년도 정리 목표액 2,592억원을 달성토록 하겠으며

- 아울러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골프장은 1개소이며 '04. 9월 현재 체납액은 4,320백만원이고 원인은 공사비 과다 지출 및 경영악화입니다

※ '04. 1~9월까지 징수액 : 42억 300백만원

- 징수대책으로는 과점주주에 대한 재산확인후 공매의뢰, 신용카드매출채권압류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겠으며

- 체납자 중 납세능력 상실자에 대하여는 재산 소유 여부를 일제 조사하여 관계법령에 적합한 대상자는 결손처분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김용식 위원(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호 자치행정위원회 2004. 11. 30)

(질 의)

- '03년 대비 '04년 체납증가액, 증가사유, 세목별 징수대책과 체납액 징수 부진시·군에 대한 조치실태와 체납액 일소계획에 대하여 물의했습니다.

(답 변)

- '03년 9월 대비하여 '04. 9월 현재 체납액 증가금액은 314억원이고 주요 사유로는 공동주택 건축등 과세물건 증가에 따른 지방세 부과건수 및 세액의 증가가 주요원인이며

※ '03년 9월 지방세 부과액 6조 6,540억원

※ '04년 9월 지방세 부과액 6조 9,162억원

- 체납액 징수증대를 위하여 체납액 정리대책시달, 체납액광역기동반 운영, 체납자 직장조회(726천명), 징수실적에 의한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차등지급(6억원), 부진시·군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목별 징수대책은 체납액을 징수함에 있어 체납자의 부동산 또는 예금 등을 발견할 경우 세목과 관계없이 우선 채권확보를 하고

있으며,

-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시·군 자체적으로 부단체장 주관으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추진토록 하고 있고 고액 상습체납자 형사고발, 부동산공매 실시 등 효율적인 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세정 종합평가 시상자료 별도 제출

- 정홍자 위원(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호 자치행정위원회 2004. 11. 30)

(질 의)

-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 대책과
- 납세기피, 고질체납자 현황 및 '03년 결손처분액과 '04년 결손처리예상액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도의 경우 1인당 체납세액이 5천만원 이상자는 고액체납자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5천만원 이상 체납자 843명/1,126억원

-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재산변동을 면밀히 주시하여 공매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04. 10월 강도 높은 징수를 전개하고자 생활실태 일제조사, 개인별 책임징수제, 관허 사업취소 등 특단의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 또한 '04. 9월 현재 지방세 체납자 중 납세기피자는 2,291천건에 2,094억원으로 전체체납액의 35.5%를 차지하고 있으며,

- '03년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1,270억원이며, '04. 9월 현재 결손처분액은 650억원이며 향후 결손처리예상액은 시·군별로 구체적인 결손사유를 재확인 후 가능함으로 현재는 예측이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 양태홍 위원(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호 자치행정위원회 2004. 11. 30)

(질 의)

- 하루에도 많은 법인이 폐업, 부도되고 있는 어려운 경제여건임을 우려하시면서
- 연간 실시하는 세무조사 법인수 및 법인체납 건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 도에서는 도내에 사업장을 둔 4만여 개 법인(지점·사업장 등 포함)에 대하여 통상 2~3년 주기로 매년 13,000여 개 법인에 대하여 시·군별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4. 9월말 현재 31개 시·군의 총 법인체납은 148,503건에 1,389억원입니다.

※ 총 법인체납 건수는 연도별·시·군별 중복된 누계치임

-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법인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도내 여러 시·군에 다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 법인 등에 대하여는 도에서 일괄하여 1회의 조사로 종결함으로써 조사 횟수를 줄이고 있으며, 직전 세무조사시 추정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성실납세법인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주기를 최대한 연장하여 주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직접방문조사보다는 서면세무조사를 확대하는 등 세무조사로 인한 법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 직접조사 30%, 서면조사 70%

○ 정홍자·한총재 위원(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호 자치행정위원회 2004. 11. 30)

(질 의)

- 소급조례를 개정 한 시·군 현황과 재산세를 환급하고 있는 시·군 및 이를 준비 중인 시·군간에 형평성 문제등 홍보 대책과
- 소급조례 관련 대법원 제소 의사와 도의 재의 요구를 거부한 시·군에 대한 법적 제재수단이나 대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금년도 재산세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과표산출 방식을 종전 면적기준에서 실거래가가 반영된 국세청기준시가 제도로 전환하

였습니다.

- 국세청 기준시가가 높은 신도시 지역을 비롯한 일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재산세가 최고 2~3배 인상되었으며, 아울러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지와 지방지 등을 통하여 2회에 걸쳐 광역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성남시, 구리시와 용인시 의회에서 재산세율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조례를 개정하였고 고양시, 안양시에서는 내년부터 인하적용 하는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 '04년도 재산세 인상률(전년대비)20.7% (아파트인상률 32.8%)

※ 주요 시·군별 공동주택 재산세 인상률(%) : 과천 104.9, 성남 99.8, 광명 84.3, 안양 52.8, 광주 52.3

-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는 시장·군수가 조례에 의거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표준세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시장·군수는 정부정책과 주민의견이 적절히 조화되고 공평과세 실현 등을 고려하여 시·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이나

- 과세기준일·납부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소급조례를 개정 한 것은 세무행정의 공신력, 법적 안정성, 세부담의 공평성을 저해하는 조례로 판단됨에 따라

- 경기도는 8월 23일 성남시, 구리시, 용인시에 재의요구를 지시하였으나 성남시는 8월 31일 소급조례를 공포하였고, 구리시와 용인시는 시의회에 재의 요구하여 9월 6일과 11월4일 각각 재의결 하고, 9월 9일과 11월 12일 재의결된 조례를 공포하여 재산세를 환급하고 있습니다

- 소급조례에 관한 법적인 문제는 도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다수의견이 지방세법의 자치권 범위내에서 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 따라서 도에서는 일시에 급격히 세금이 인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시장·군수의 탄력세율 조정권을 존중하여 사법부 제소 등 추가적인 대응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 현재 도의 재의요구를 거절하고 재산세를 환급 중에 있는 성남시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상의 관련규정 미비로 실효성 있는 제재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이와 같은 경우 대법원에 제소가 가능하도록 지난 8월 24일 지방자치법 개정법령(안)을 입법예고 한 후 개정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소급감면조례 개정 관련 현황

##### □ 재산세 소급감면조례 개정 추진실태

- 재산세율 인하 소급조례 개정
- 성남시 : 세율 30% 소급인하 의결(8. 7), 공포(8. 31)
  - 구리시 : 세율 30% 소급인하 의결(8. 6), 재의결(9. 6), 공포(9. 9)
  - 용인시 : 세율 16% 소급인하 의결(9. 24), 재의결(11. 4), 공포(11. 12)

- 도지사 ⇒ 성남시·구리시(8.23), 용인시(10.15)에 재의요구 지시

##### □ '04. 재산세 환급내역

| 구분  | 당초부과액 |           |        |           |        | 환부대상 금액 |           |       |           | 환부액 (11.25현재) |           |       |           | 비율   |      |
|-----|-------|-----------|--------|-----------|--------|---------|-----------|-------|-----------|---------------|-----------|-------|-----------|------|------|
|     | 건수    | 합계<br>(A) | 재산세    | 지방<br>교육세 | 도시계획세등 | 건수      | 합계<br>(B) | 재산세   | 지방<br>교육세 | 건수            | 합계<br>(C) | 재산세   | 지방<br>교육세 | C/A  | C/B  |
| 성남시 | 248   | 65,098    | 33,708 | 6,740     | 24,650 | 186     | 8,694     | 7,246 | 1,448     | 168           | 7,472     | 5,978 | 1,494     | 11.5 | 85.9 |
| 구리시 | 49    | 8,609     | 4,124  | 824       | 3,661  | 38      | 1,020     | 850   | 170       | 30            | 656       | 545   | 111       | 7.6  | 64.3 |
| 용인시 | 185   | 52,018    | 28,785 | 5,756     | 17,477 | 158     | 4,145     | 3,454 | 691       | 49            | 1,418     | 1,182 | 236       | 2.7  | 34.2 |

※ 서울시 : 25개구 중 19개 구에서 탄력세율 적용

- 고오환·심규송·한충재 위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호 자치행정위원회 2004. 11. 30)

(질 의)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도의 입장과 세수감소 및 조세저항에 대한 대책은?
-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이중과세문제, 자치입법권 침해 및 지방자치의 역행문제, 징수업무의 혼란과 위탁징수시 대책은?
-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타(他)시도 연계등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 갈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정부는 기본조세정책으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여 부동산 가격의 안정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보유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은
- 토지·건물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과세(국세청기준시가의 50%)하며, 토지는 공시지가의 50%로 평가 (현행 공시지가에 적용비율도 평균 38.8% 반영) 토록 개선하고
  -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여 1차로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과세소유 부동산가액이 일정 기준액 초과자는 2차로 국가가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보유세를 이원화 하는 것으로 주택 9억원, 나대지 6억원, 사업용 토지 40억원 이상 보유자가 해당됩니다.

## 부동산별 과세방법

| 구 분    | 현 행                  | 개 편 안         |                       |
|--------|----------------------|---------------|-----------------------|
|        |                      | 1차(시·군·구-재산세) | 2차(국가-종합부동산세)         |
| 주 택    | 토지 : 종토세<br>건물 : 재산세 | 기초세율로 재산세 과세  | 일정기준금액 초과분<br>추가세율 과세 |
| 나 대 지  | 종토세 과세               | 기초세율로 과세      | 주택과 같음                |
| 사업용 토지 | 종토세 과세               | 기초세율로 과세      | 주택과 같음                |
| 사업용 건물 | 재산세 과세               | 세율인하          | (과세 안함)               |

- 정부의 추진 동향을 말씀드리면 '04. 11. 8. 행자부에서 종합부동산세개편(안) 확정시달하였고 금년 '04. 11. 16 행자부 주관으로 시·도세정장회의를 개최하여 보유세제 개편관련 협조 요청을 한 바 있고, '04. 11. 19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개편관련 도의 기본입장은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완화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나 보유세의 일시적인 급격한 인상은 조세저항이 우려되어

점진적이고 점차적인 인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따라서 도에서는 수차례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정부에서는 보유세제 개편(안)에 전년대비 최고인상률을 50% 이내로 제한하도록 상한선을 마련하여 세액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종합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재산세 및 종토세는 '04년 7,434억원 보다 4.3%인 318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서 전액 보전하도록 되어 있어 세수결함은 없을 것입니다.
- 정부의 보유세제개편은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인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지방세제의 이원화, 부과·징수혼란 및 자주 과세권 침해와 지방세와 국세의 중복과세로 인한 조세저항 야기 등의 많은 문제점이 있어
- 우리 도에서는 금년 '04. 8. 13 재경부와 행자부에 종합부동산세 신설시 문제점 및 대책을 건의하였고, '04. 11. 4 국무총리실, 재경부, 행자부, 국회 행정자치·재정경제, 양당 정책위의장 등에게 보유세제 개편대책을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서울시와 각 시·도와도 연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 종합부동산세(국세) 신설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대응조치

##### □ 중앙추진상황

- '04. 11. 8 행정자치부에서 개편(안) 시달
  -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
  - 주택 9억원, 나대지 6억원, 사업용토지 40억원 이상 중부세 부과
  - ※ 등록세 세율 1.5 %인하(현행 3% → 개정 1.5 %)
- '04. 11. 16 행자부에서 시도 세정과장 회의개최 협조요청
  - 정부(안) 일부수정(등록세율 인하 개인 1.5%, 법인 1.0%)
- '04. 11. 18 의원입법으로 국회 제출(대표의원 김종률)
- '04. 11. 19 국회 재경위, 행자위 상임위원회에 접수

##### □ 시·도 대응조치 사항

- 시·도(세정과장) 협의회에서 행자부에 국세화 반대 건의('04. 6. 10)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행자부에 반대 건의('04. 8. 5)
- 경기도 보유세제 개편 문제점 및 대책건의 : 2회(1차 8. 13 2차 11. 4)

- 국세 신설 반대, 조세저항 우려로 보유세의 연차적 점진적 인상
  - 1차 :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 2차 : 국무총리실, 재경부, 행자부, 국회 행정자치·재정경제위원회, 양당 정책위 의장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헌법소원 제기발표('04. 11. 4)
- 전국 시·도 세정과장 협의회 회의시 공동대응 협의('04. 11. 8)
- 시·군·구 세무과장 회의개최 지역 국회의원에게 협조요청('04. 11. 9)
- 도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안) 설명 협조요청('04. 11. 11)
- 시·군·구 세정과장, 담당자 회의 개최
  - 정부의 개편(안) 설명 및 대응협의 ('04. 11. 17)
  - ※ 서울시에서도 국회 등 정부요로에 반대의견 제출 예정

○ 황치문 위원(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호 자치행정위원회 2004. 11. 30)

(질 의)

- '03년도에는 정기예금·적금 등에 712억원을 3년간 예치 운용하였는데 '04년 이후 장기예금에 예치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03년까지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는 600억원은 '01년도 도세입금의 여유자금에 많아 3월과 5월에 3년 기간으로 예치하였으나 금년도 3~7월에 예치기간이 만료되어 712억원을 이자율이 높은 환매채로 재예치 하였으며
- 금년도에 6개월 이하로 예치한 사유는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에 따른 지방세입 3,600억원 감소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반기 조기집행 등으로 인한 예금 평잔이 4천억원 상당 감소되어 자금의 지출시기를 감안하여 6개월 이하로 예치한 것임.
  - ※ '01년 가입시 3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6.8%

## ○ 금리비교('04. 10. 31 현재)

| 상품명  | 예치기간별    | 금리(%) |      | 금리차   |
|------|----------|-------|------|-------|
|      |          | 농협    | 한미   |       |
| 정기예금 | 1개월이상    | 2.50  | 2.60 | -0.10 |
|      | 3개월이상    | 2.80  | 2.80 | 0.00  |
|      | 6~11개월   | 3.00  | 3.00 | 0.00  |
|      | 36개월 이상  | 3.50  | 3.20 | 0.30  |
| 환매채  | 30~59일   | 2.95  | 2.50 | 0.45  |
|      | 60~90일   | 3.00  | 2.70 | 0.30  |
|      | 91~119일  | 3.05  | 2.70 | 0.35  |
|      | 120~180일 | 3.10  | 2.90 | 0.20  |
| 정기적금 | 6개월이상    | 3.30  | 3.20 | 0.10  |
|      | 36개월이상   | 3.80  | 3.80 | 0.00  |

## ○ 신재춘 위원(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호 자치행정위원회 2004. 11. 30)

(질 의)

- 씨티그룹의 한미은행 인수에 따른 경기도의 특별회계 도금고 자격과 도금고간 금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04. 10. 29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한미은행과 씨티은행의 국내지점에 대한 영업양수도 등에 대한 인가를 하였음
- 따라서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미은행이 씨티그룹의 국내 지점을 양수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금고업무 취급자격에는 변동이 없음.
- 그러나 금융시장이 개방된 현실에서 100% 외국자본인 한국씨티은행에게 도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은행 신용도, 도 자금운영의 안정성과 해외자본유치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견해입니다.

- 현행 금고의 약정 만료일이 '07. 3월말까지로 되어있어 향후 금고선정시 그동안의 금고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안정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투명성 있게 금고를 선정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 금리비교('04. 10. 31 현재)

| 상품명  | 예치기간별    | 금리(%) |      | 금리차   |
|------|----------|-------|------|-------|
|      |          | 농협    | 한미   |       |
| 정기예금 | 1개월이상    | 2.50  | 2.60 | -0.10 |
|      | 3개월이상    | 2.80  | 2.80 | 0.00  |
|      | 6~11개월   | 3.00  | 3.00 | 0.00  |
|      | 36개월 이상  | 3.50  | 3.20 | 0.30  |
| 환매채  | 30~59일   | 2.95  | 2.50 | 0.45  |
|      | 60~90일   | 3.00  | 2.70 | 0.30  |
|      | 91~119일  | 3.05  | 2.70 | 0.35  |
|      | 120~180일 | 3.10  | 2.90 | 0.20  |
| 정기적금 | 6개월이상    | 3.30  | 3.20 | 0.10  |
|      | 36개월이상   | 3.80  | 3.80 | 0.00  |

- 양태홍 위원(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호 자치행정위원회 2004. 11. 30)

(질 의)

- 씨티그룹의 한미은행 인수에 따른 경기도의 특별회계 도금고 자격과  
○ 향후 농협으로 단수금고를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한국씨티은행의 금고자격여부는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미은행이 씨티그룹의 국내 지점을 양수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금고업무 취급자격에는 변동이 없음.
- 그러나 금융시장이 개방된 현실에서 100% 외국자본인 한국씨티은행에게 도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은행 신용도, 도 자금운영의 안정성과 해외자본유치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정에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견해입니다.

○ 복수금고를 운영하는 이유는

금고은행간의 경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이자수입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고객서비스증대, 은행의 경영악화, 파산우려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자금관리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행자부에서도 지자체의 복수금고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예) 농협과 한국씨티은행의 동종의 상품일 경우 금리를 비교하여 유리한 쪽의 금고은행 금리를 적용

※ 복수금고 운영시·도 : 12개 시·도(경기,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